#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7

발의연월일: 2024. 7. 5.

발 의 자:김위상・구자근・김선교

김성원 • 박준태 • 박충권

강승규 · 김승수 · 서범수

김소희 • 곽규택 • 김형동

의원(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다태아의 경우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육아부담이 증가하는데도 동일한 휴가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를 25일(청구기한 120일)을 주도록 확대함으로써 다태아를 출생한 근로자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나, 현행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충분 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다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여성에게 돌봄부담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임.

이에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 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 주요내용

- 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생아 수 상관없이 10일을 주도록 하던 것을,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을 주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청구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함(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
- 나. 근로자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제19 조제2항 전단의 1년으로 함(안 제19조의2제4항).

#### 법률 제 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10일"을 "10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90일"을 "90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로 한다.

제1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각각 제1항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의2제4항 단서 중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을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전단"으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 로자부터 적용한다.
- 제3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 제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혀 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 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 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10일(배우자가 한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경우에는 25일)-----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 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 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육아휴직) ① (생 략) 제19조(육아휴직) ① (현행과 같 음)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 내로 한다. <단서 신설> ----. 다만, 같은 자녀를 대 상으로 부모가 모두 각각 제1 항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족지원 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 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

③ ~ ⑥ (생 략)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
축) ① ~ ③ (생 략)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기간 이내로 한다

⑤ ~ ⑦ (생 략)

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u>수 있</u>	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 축) ① ~ ③ (현행과 같음)

(4)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전단--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⑤ ~ ⑦ (현행과 같음)